

무배당 행복 knowhow 연금보험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확인서

무배당 행복 knowhow 연금보험을 개정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14년 2월 26일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선임계리사 남 효 성 (인)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행복 knowhow 연금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가. 무배당 ①행복 knowhow 연금보험 1형(기본형)

| 연금지급형태 | | |
|-------------------------|--------------|----------------------|
| 종신연금형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 정액형 | 10년보증, 20년보증, 100세보증 |
| | 체증형(5%, 10%) | 10년보증, 20년보증 |
| | 활동기집중형 | 20년보증 |

나. 무배당 ①행복 knowhow 연금보험 2형(무사망급부형)

| 연금지급형태 | | |
|-------------------------|--------------|----------------------|
| 종신연금형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 정액형 | 10년보증, 20년보증, 100세보증 |
| | 체증형(5%, 10%) | 10년보증, 20년보증 |
| | 활동기집중형 | 20년보증 |

※ 동 상품은 상품 명칭에 판매경로(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 및 계약자를 표시할 수 있는 문구를 ①에 삽입해 사용할 수 있음.

2. 연금지급개시나이, 보험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연금지급개시나이, 보험기간 및 가입나이

| 구분 | | 1형(기본형) | 2형(무사망급부형) |
|-------------|---------------|--|--------------|
| 연금지급개시나이(Y) | | 45세 ~ 80세 (다만, 부부연금형의 경우 48세 ~ 80세) | |
|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부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Y)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지급개시나이(Y) 계약해당일부 종신까지 | |
| 가입나이 | | 만 15세 ~ (Y-10)세 | 0세 ~ (Y-10)세 |

※ 다만, 연금지급개시나이는 가입 후 납입기간이 지난 이후에 한함

※ 또한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선택할 때 가입나이는 해당 연금지급개시나이의 최고 가입나이를 초과할 수 없음

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 구분 | 1형(기본형) | 2형(무사망급부형) |
|----------|-----------------------|------------|
| 보험료 납입기간 | 3/5/7/10/15/20년납, 전기납 | |
|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 |

※ 다만, 전기납의 경우 10년을 최소 납입기간으로 함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1 구좌당)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변경할 때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한다.

(1) 1형(기본형)

| 최저납입기준 (1 구좌한도: 100 만원이하) | 3년납 | 5년납 | 7년납 | 10년납 | 15년납 | 20년납 | 전기납 |
|---------------------------------|-----------|-----------|-----------|-----------|-----------|-----------|-----------|
| 10만원 이상 | - | 만 15세~60세 | 만 15세~64세 | 만 15세~34세 | 만 15세~65세 | 만 15세~60세 | 만 15세~34세 |
| 15만원 이상 | 만 15세~63세 | 61세~70세 | 65세~70세 | 35세~67세 | - | - | 35세~67세 |
| 20만원 이상 | 64세~69세 | - | - | 68세~70세 | - | - | 68세~70세 |
| 25만원 이상 | 70세 | - | - | - | - | - | - |

(2) 2형(무사망급부형)

| 최저납입기준 (1 구좌한도: 100 만원이하) | 3년납 | 5년납 | 7년납 | 10년납 | 15년납 | 20년납 | 전기납 |
|---------------------------------|--------|--------|--------|---------|--------|--------|---------|
| 10만원 이상 | - | 0세~70세 | 0세~70세 | 0세~34세 | 0세~65세 | 0세~60세 | 0세~34세 |
| 15만원 이상 | 0세~70세 | - | - | 35세~70세 | - | - | 35세~70세 |

나. 추가납입보험료

- 보험계약 승낙일(승낙일이라 함은 계약자의 청약 후 회사의 승낙을 얻은 날을 말하며, 그에 따라 청약일과 승낙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후부터 보험기간(연금개시후 보험기간 포함) 중 기본보험료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경과기간에 따라 1회 납입가능한 추가납입 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에는 추가납입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연금개시시점에 노후자유자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다.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선납포함)의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시중금리가 최저보증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추가납입한도를 상기의 한도의 9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서 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인출금액만큼 추가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다. 다만,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이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 매회 10만원 이상 만원단위 금액으로 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기본보험료가 30만원 초과인 경우 기본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할인하여 이를 영수한다.

| 매월 기본보험료 | 할인금액 |
|------------------|---|
| 30만원 초과 50만원 미만 | 기본보험료 중 30만원 초과부분의 0.5% |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0원 + (기본보험료 중 50만원 초과부분의 1.4%) |
| 100만원 이상 | Min{8,000원 + (기본보험료 중 100만원 초과부분의 1.6%), 기본보험료의 1.0%} |

※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의 변경, 일부 해지 등을 이유로 기본보험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기본보험료 기준으로 고액계약 할인율을 적용한다.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월납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된 이율로 적립하며, 해당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약관 제 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0. 적립액의 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부터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회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인출 최고한도는 인출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하고,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인출 후 적립액이 1구좌당 100만원 미만인 경우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단위로 한다.

나. 적립액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장기유지보너스 포함)에서 인출할 수 있다.

다. 적립액의 인출로 인하여 장래의 보장계약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다.

라.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적립액을 인출할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적립액 인출 당시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잔여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동안의 월대체보험료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의 연금계약 적립액 및 노후자유자금에 적용하는 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나. '가'의 공시이율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적용한다. 회사는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기준이율의 90% ~ 110%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변화 등에 따라 내부지표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조정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 공시기준이율의 산출

(1) 공시기준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다만,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와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및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text{내부지표} \times (1 - \alpha) + \text{외부지표} \times \alpha$$

(2) 내부지표 산출식

$$\text{내부지표} = \frac{2 \times (I - E)}{A_{12} + A_0 - (I - E)} \times 100$$

- (주) 1. I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간 투자 영업수익
2. E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간 투자 영업비용
3. A_{12} : 산출시점 직전 13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A_0 : 산출시점 직전 1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3) 외부지표 산출식

외부지표 = 국고채(5년)수익률 $\times \beta_1$ + 회사채(무보증 3년, AA-)수익률 $\times \beta_2$ + 통화안정증권(1년)수익률 $\times \beta_3$

- (주) 1. 국고채 가중치, 회사채 가중치, 통화안정증권 가중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beta_1 : \text{국고채 가중치} = \frac{a}{a + b + c}$$

$$\beta_2 : \text{회사채 가중치} = \frac{b}{a + b + c}$$

$$\beta_3 :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 = \frac{c}{a + b + c}$$

- a 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b 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c 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2. 국고채(5년) 및 회사채(무보증 3년, AA-)와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3. 세부 지표금리의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의 실제금리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하는 공시이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표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

(4) 내부지표와 외부지표의 가중치

(가)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의 가중치}(\alpha) = \frac{A/B + C}{A + C}$$

$$\text{내부지표의 가중치}(1 - \alpha) = 1 - \frac{A/B + C}{A + C}$$

- A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나)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다)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라)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마)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수입보험료」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바) 「수입보험료」는 원수보험료를 말한다.

- 라.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2.0%를 적용한다.
- 마. ‘나’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나’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 바. 세부적인 공시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지침을 따른다.
- 사.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 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이전에 언제든지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확정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이후에도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나. 이 상품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 1.5%」로 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 다. 계약자는 ‘가’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월계약해당일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해당월의 보장계약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14.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다음에서 정하는 시점이 지난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

| 보험료 납입기간 | 납입일시중지 신청 가능 시점 |
|-------------------|-----------------|
| 5년납 | 3년 |
| 7년납 | 4년 |
| 10년이상(다만, 전기납 제외) | 5년 |
| 3년납, 전기납 | 신청불가 |

- 나. ‘가’의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이후의 납입기일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된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에 따라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의 나이가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완료시점 이후 최초로 돌아오는 연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나이가 연기된다.

- 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월대체보험료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그 때부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 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라.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신청가능횟수는 총 5 회를 한도로 하며, 1 회 신청당 12 개월(최소 3 개월)을 최고 한도로 한다. 또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누적하여 36 개월(기본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의 신청은 월단위로 가능하다.
- 마. 계약자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바. 회사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 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의 종료(보험료 납입일시중지 신청으로 인한 월대체보험료가 해지환급금에서 더 이상 공제되지 못한다는 사실 등)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한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15.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또는 계약자의 신청에 따른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으로 정한다.

16. 적립액의 계산

연금계약 순보험료(보험료에서 보장계약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책임준비금을 말한다.

17. 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계약일 이후 10 년이 경과하고 아래의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 도달한 경우 장기유지보너스 해당 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액에 추가로 적립한다.

|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 장기유지보너스 해당금액 |
|--|--------------------------|
| 120 회차 해당일*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 적립액의 2.0% |
| 180 회차 해당일*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 적립액의 1.5% |
| 240 회차(240 회차부터 매 60 회차) 해당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 적립액의 1.0% |

※ 해당일*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중에는 실제 납입일(선납시 해당회차 월계약해당일)을 말하며, 납입완료 후에는 월계약해당일을 말한다.

※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 적립액이라 함은 추가납입을 제외한 적립액(장기유지보너스 포함)에 한하여 계산되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연금개시일 포함)에 한하여 적립한다.

18. 노후자유자금에 관한 사항

- 가. 1형(기본형) 약관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5 호 및 2형(무사망급부형) 약관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4 호의 ‘노후자유자금’이란 ‘노후자유자금(연금개시시점)’과 ‘노후자유자금(연금개시시점 이후)’을 지칭한다. ‘노후자유자금(연금개시시점)’은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에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자유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노후자유자금(연금개시시점 이후)’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동안에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이 있을 경우에는 노후자유자금에 추가납입보험료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합산하고, 노후자유자금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노후자유자금에 인출금액만큼 차감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나. 노후자유자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이율로 부리 적립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2.0%를 적용한다.
- 다.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가’의 노후자유자금선택비율을 0% ~ 50% 범위내에서 5%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 라. 노후자유자금을 선택한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에 노후자유자금(연금개시시점)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노후자유자금선택비율이 0%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 전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지급한다.
- 마.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이후 노후자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년도 기준 연 12 회에 한하여 노후자유자금의 범위내에서 노후자유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 금액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 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확정연금형의 만기일(확정연금의 최종 지급일)이 된 경우에는 잔여 노후자유자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19.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Ⅲ 전환에 관한 사항

- 가.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Ⅲ의 피보험자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또는 자녀(이하 ‘배우자 또는 자녀’라 한다)에 한하며, 연금전환 신청 당시 배우자 또는 자녀의 나이가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 나.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Ⅲ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한다.
- 다.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Ⅲ는 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20. 기타

- 가.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나.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text{기본보험료} \times 12 \times \text{Min}(\text{보험료 납입기간}, 10)$
- 다. 연금지급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계약자는 가입시에는 연금지급형태 중 종신연금형만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 및 노후자유자금선택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2) 변경가능한 연금지급형태

| 연금지급형태 | | |
|---------------------------|--------------|----------------------|
| 종신연금형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 정액형 | 10년보증, 20년보증, 100세보증 |
| | 체증형(5%, 10%) | 10년보증, 20년보증 |
| | 활동기집중형 | 20년보증 |
| 확정연금형 (7년, 10년, 15년, 20년) | | |
| 상속연금형 | | |

(3) 노후자유자금선택비율: 0% ~ 50% 범위(다만, 5% 단위로 선택 가능)

(4) 활동기집중형을 선택하는 경우 집중지급기간(5년, 10년) 및 지급배수(3배, 5배)를 선택해야 하며, 연금지급개시 후에는 집중지급기간 및 지급배수를 변경할 수 없다.

(5) 연금개시나이 및 보험기간

| 구분 | 개인연금형 | 부부연금형 |
|-----------------|---|-----------|
| 연금지급 개시나이(Y) | 45세 ~ 80세 | 48세 ~ 80세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종신연금형(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 연금지급개시나이(Y)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 연금지급개시나이(Y) 계약해당일부터 7년, 10년, 15년, 20년 상속연금형 : 연금지급개시나이(Y)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

※ 다만, 연금지급개시나이는 가입 후 납입기간이 지난 이후에 한함

라.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마.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1) 이 보험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 4-14 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범용으로 한다.

(2) 이 보험의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 대비 90%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바. 생존연금(종신연금형) 지급에 관한 사항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적립액에 (1-노후자유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3개월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형태 선택방법 등을 안내한다.

(별첨 제 1 호)

보험증권의 서식

(별첨 제 2 호)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

(별첨 제 3 호)

보험계약 부활(효력회복)청약서의 서식